

심사보고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2. 3.10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

3. 회부일자 : 2022. 3.16.

4. 상정일자 :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4. 5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2. 4.11.)

- 원안 가결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- 의안번호 제3156호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
- 본 안건은 ‘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’, ‘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’ 등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정책사업비의 39.1% 규모인 40억 4천 6백만 원을 변경하는 것임
-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신규사업 편성을 위하여 ‘비용자성 사업비’를 58억 5천 6백만 원에서 92억 9천 6백만 원으로 34억 4천만 원 증액, ‘융자성 사업비’를 45억 원에서 51억 6백만 원으로 6억 6백만 원 증액하였으며, 재무활동은 ‘예치금’을 503억 8천 5백만 원에서 463억 3천 9백만 원으로 40억 4천 6백만 원 감액하였음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신정희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156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)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가. 신규사업 편성(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 외 1건)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1,990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%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1,990백만원 감액하여
- 나. 정책사업비를 14,402백만원, 예치금을 46,339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
다.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백만원)

| 지출계획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항목 | 당초 계획 (A) | 1차 변경 | 2차 변경(B) | 증감 (C = B - A) | 증감률 (C/A*100) | |
| 계 (순지출) | 60,746 (10,361) | 60,746 (12,417) | 60,746 (14,407) | - (4,046) | - (39.1%) | |
| 정책사업비 | 계 | 10,356 | 12,412 | 14,402 | 4,046 | 39.1% |
| | 비용자성 사업비 | 5,856 | 7,306 | 9,296 | 3,440 | 58.7% |
| | 용자성 사업비 | 4,500 | 5,106 | 5,106 | 606 | 13.5% |
| 행정운영경비 | 기본경비 | 5 | 5 | 5 | - | - |
| 재무활동 | 예치금 | 50,385 | 48,329 | 46,339 | △4,046 | △8.0% |

- 1차변경 :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지원 606백만원 신규 편성,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1,000백만원 신규 편성, 지하도상가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50백만원 신규 편성(예치금 2,056백만원 감액)
- 2차변경 :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 1,890백만원 신규 편성,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100백만원 신규 편성(예치금 1,990백만원 감액)

3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의 변동없이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중 예치금**을 감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기후변화 대응 강화**중 세부 사업에 대한 지출액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비 20%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**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**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음
- 동 기금의 경우, 지난 2월,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입 계획의 변동없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증·감 조정한 것으로
 -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503억 8,500만원)보다 △4.1%, △20억 5,600만원을 감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기후변화 대응 강화**는 당초 지출계획(103억 5,600만원)보다 19.9%, 20억 5,6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책사업비의 20% 미만을 변경한 사안으로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
- 그러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정책사업중 실제로는 19억 9,000만원을 증·감 조정하려는 것임에도 **의회로부터 의결 받은 액수**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액 보다 40억 4,600만원을 변경 요청한 것인 바,
 - 동 기금의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기후변화 대응 강화**는 당초 대비 39.1% 증가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

당됨

-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에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, 심의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
 - 예치금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지출계획 함으로써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,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“비용자성사업, 융자성사업, 기본경비, 예치금”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**①기후변화 대응 강화, ②일반예산(재무활동), ③행정운영경비**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,
 - 지난 '21년 12월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
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1〉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 변경현황

(단위 : 백만원,%)

| 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| 당 초 (A) | 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| 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*22.3%의지출) | 증 감 (C=B-A) | 증 감 륜 (D=C/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계 | 60,746 | 60,746 | 60,746 | 0 | - |
| 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 | 50,385 | 48,329 | 46,339 | △4,046 | △8.0 |
| 보 전 지 출 | 50,385 | 48,329 | 46,339 | △4,046 | △8.0 |
| 여 유 자 금 예 치 | 50,385 | 48,329 | 46,339 | △4,046 | △8.0 |
| 기 후 변 화 대 응 강 화 | 10,356 | 12,412 | 14,402 | 4,046 | 39.1 |
|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(기후변화기금) | 10,356 | 12,412 | 14,402 | 4,046 | 39.1 |
|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| 5,060 | 5,060 | 5,060 | 0 | - |
|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용자 관리 시스템 운영·유지 | 14 | 14 | 14 | 0 | - |
|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| 1,575 | 1,575 | 1,575 | 0 | - |
|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 성 및 운 영 | 1,200 | 1,200 | 1,200 | 0 | - |
|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| 570 | 570 | 570 | 0 | - |
| 태 양 광 발 전 시 설 설 치 자 금 지 원 | 20 | 20 | 20 | 0 | - |
|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 자 지 원 | 1,010 | 1,010 | 1,010 | 0 | - |
|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| 646 | 646 | 646 | 0 | - |
| 서울형 에너지혁신지구 조성 | 200 | 200 | 200 | 0 | - |
|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| 60 | 60 | 60 | 0 | - |
|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 업 자 육 성 지원 | 0 | 606 | 606 | 606 | - |
|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 증 사 업 추 진 | 0 | 1,000 | 1,000 | 1,000 | - |
| 지하도상가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| 0 | 450 | 450 | 450 | - |
|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 리 (매 입) | 0 | 0 | 1,890 | 1,890 | - |
|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| 0 | 0 | 100 | 100 | - |
| 행 정 운 영 경 비 | 5 | 5 | 5 | 0 | - |
| 기 본 경 비 | 5 | 5 | 5 | 0 | - |
| 기 금 관 리 비 | 5 | 5 | 5 | 0 | - |

※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

자료근거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안건번호 3156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편집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2. 4. 6(수) 10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2. 4. 7(목) 10:00 ~ 20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

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2. 4.11.)

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15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신규사업 편성(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 외 1건)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1,990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%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1,990백만원 감액하여
- 나. 정책사업비를 14,402백만원, 예치금을 46,339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
- 다.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: 백만원)

| 지출 계획 | 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항목 | 당초 계획 (A) | 1차 변경 | 2차 변경(B) | 증감 (C=B-A) | 증감률 (C/A*100) | |
| 계 (순지출) | 60,746 (10,361) | 60,746 (12,417) | 60,746 (14,407) | - (4,046) | - (39.1%) | |
| 정책사업비 | 계 | 10,356 | 12,412 | 14,402 | 4,046 | 39.1% |
| | 비용자성 사업비 | 5,856 | 7,306 | 9,296 | 3,440 | 58.7% |
| | 융자성 사업비 | 4,500 | 5,106 | 5,106 | 606 | 13.5% |
| 행정운영경비 | 기본경비 | 5 | 5 | 5 | - | - |
| 재무활동 | 예치금 | 50,385 | 48,329 | 46,339 | △4,046 | △8.0% |

- 1차변경 :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지원 606백만원 신규 편성, 온실가스감축 혁신기술 실증사업 추진 1,000백만원 신규 편성, 지하도상가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50백만원 신규 편성(예치금 2,056백만원 감액)
- 2차변경 :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(매입) 1,890백만원 신규 편성,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시범사업 100백만원 신규 편성(예치금 1,990백만원 감액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박승미 (☎ 2133-3517)